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8. 28.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8월 14일

나. 발의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돋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항목을 마련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물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호)

○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및 채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뜻하며, △가격 기준(지역 인근 상권 평균가격 미만), △위생·청결 기준(주방 청결도, 위생복 착용, 수저 소독 여부 등), △공공성 기준(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함. 2011년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를 시작하여, 영등포구 관내에는 총 76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음.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규

정을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며 개인 서비스 업소의 매출 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제출됨.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항에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본 조항 신설로 인해 기존 제8조는 제9조로 조문 이동하였으며, 근거 규정 없이도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시행규칙 제정 근거 규정인 제9조는 삭제하여 조례 정비를 함.

##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규정 확대, △물가모니터요원 채용·운영 규정 신설을 통해서 우리 구(區) 지역 물가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된 지원 사항의 추가는 정책 수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현재 국비(30%), 시비(70%)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올 초('25.1.9.~1.24.) 관내 착한가격업소 68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지원 내용 및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상·하수도 등 공과금 지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였음.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업소가 물품의 개별구매 방식(업소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증빙자료 제출 시 금액 정산)과 공과금 지원을 선호하였음.
- 물가 상승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원금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종량제봉투, 주방세제, 고무 장갑 등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의 단가는 매우 낮아 대량 구매에 따른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과금 지원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업소에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려 함. 이러한 중앙부처 계획에 발맞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의 근거 규정을 명시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 참고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서울시 내 자치구는 총 12곳 (강남, 강북, 관악, 광진, 노원, 동대문, 서초, 성동, 양천, 용산, 종로 중구)이며 우리 구(區)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본 일부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산정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 지출의 순증가분 없이 동일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모 품뿐만이 아니라 공과금도 지원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추가 비용 발생은 없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3명\*6月, 연중 필요시 6개월 이내로 한시적 인력 운용)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는 총 44,099천원을 추산하였음.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73 호
----------	---------

제출연월일: 2025. 8. .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돋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항목을 마련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물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호)
- 나.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및 채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4)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5. 7. 3.~7.23./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운영 및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 ----- ---.
1. (생 략) 2. <u>종량제봉투 지원</u>	1. (현행과 같음) 2. <u>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u>
3. ~ 5. (생 략) <u>&lt;신 설&gt;</u>	3. ~ 5. (현행과 같음) <u>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u> <u>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u> <u>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u> <u>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u> <u>수 있다.</u> 1. <u>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u> <u>홍보</u> 2. <u>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u> 3. <u>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u> <u>제 홍보</u> 4. <u>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지</u> <u>정·운영 및 지역물가 관리를</u> <u>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u> <u>·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u> <u>은 구청장이 정한다.</u>
제8조 (생 략)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u>&lt;삭 제&gt;</u>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내역

- 모니터요원 기본급(94,232원 x 21일 x 3명 x 6월): 35,619천원
- 모니터요원 주차수당(94,232원 x 4일 x 3명 x 6월): 6,784천원
- 모니터요원 월차수당(94,232원 x 1일 x 3명 x 6월): 1,696천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모니터요원 채용에 따른 소요예산: 44,099천원(1억원 미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고준영
연락처	02-2670-3418